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경쟁정책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

Anheuser사의 판매관행 조사대상에

미국 법무부는 미국 최대의 맥주업체인 Anheuser-Busch Inc.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동 회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동 산업계 변호사 및 임원들이 밝혔다.

당해 반트러스트 조사는 Anheuser-Busch 사가 맥주 유통업체들이 자사제품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거나 소규모 브랜드제품을 압착하기 위한 마케팅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동

회사의 공격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들 변호사 및 임원들은 말하였다. “100% 마 음 나누기” 프로그램-현금 인센티브 및 제한의 일체-으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맥주업체 및 전국적 브랜드맥주들은 미국 전역의 2,700개 독립적 맥주 유통업체들의 선반에서 사라졌다고 동 산업계의 사람들은 말하였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당해 맥주업체가 유통업체들에게 8월 1일부터 서명하도록 요청한 구속적 도매유통계약에 대하여 질문을 벌이고 있다. 배타적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 33페이지짜리 당해 계약은 Anheuser-Busch 사에게 독립적 유통업체들에 대한 광범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는 거의 모든 소유권 및 경

영권상의 변화에 대한 발언권이 포함된다.

“이들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Pyramid Breweries Inc.의 회장 겸 대표이사인 George Hancock은 말하였는데, 시애틀에 기반을 둔 이 인 기 있는 독립적 상표제품의 제조업체는 Anheuser-Busch 사의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몇몇 시장에서는 새로운 유통업체를 찾아야만 하게 되었다.

Anheuser-Busch 사의 기업법 담당 부사장인 Royce Estes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당해 회사는 조사에 대하여 어느 바 없으며 “아직 법무부나 어떤

한 정부기관의 접촉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쟁업체들이 Anheuser-Busch 사의 노력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동 회사가 국내 맥주 시장의 거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프로그램이 적절하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 7월에 예비적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관들은 최근 몇 주 동안 활동을 강화하였다고 경쟁 맥주업체 및 산업계 인사들은 말하였는데, 그러나 아직 정보 수집을 위한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10월 1일) 논평을 거부했다.

Anheuser-Busch 사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몇 건의 사적 소송에 직면하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해 회사가 독립적 유통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소규모 맥주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nheuser-Busch 사는 8월 22일 접수된 소답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소송의 기각을 청구하였다.

이들 소송에서는 “100%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이 올해 초

에 개시된 이후 소규모 맥주업체들은 거래를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금 지급, 신용대부 조건의 완화, 협력적 광고 및 운송트럭에의 광고에 따른 협찬금이 포함되는데, 이는 도매업체의 배타적 거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유통업체들은 A부터 E까지 등급이 매겨지며 A등급 회사들은 최대의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E등급 회사들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다. 여기에는 다른 유통업체를 매수하기 위한 재정적 원조가 포함된다고 한다.

병합된 소송에서는 Anheuser-Busch 사가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도매업체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해 소송에서 언급된 계약 조항 중에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은 Anheuser-Busch 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이들 제품의 판매수당이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보상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더 많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은 Anheuser-Busch 사에 대한

것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있다.

새로운 유통 계약은 “배타성 및 Anheuser-Busch 사에게 예를 들어 당해 유통업체의 유명상표 제품 관리자에 대한 거부권까지 부여하는 등 권한 부여 정도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어서 당해 유통업체는 이전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산호세 주립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소규모 맥주업체들에 대한 자문역을 담당하였던 Doug Greer는 말하고 있다. Anheuser-Busch 사는 “이제 제품 유통에 관하여 엄청난 정도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배타적 거래계약이 체결된 시장에서 그러하다고 한다.

■ 97, 10/2, The Wall Street Journal

미 법무부, Raytheon 사의 휴즈 사 취득을 조건부로 인가

법무부는 GM 사로부터 휴즈 사 방위산업부문을 취득하려는 Raytheon 사의 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최고의 방위산업체로 거듭 나려는

이 미사일 제조업체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당해 연방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취득을 전제로 Raytheon 사가 무기 체계에서 사용되는 첨단기술 센서 제조부문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Raytheon 사는 당해 사업 부문의 원매자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문은 소규모로서 약 5,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일정 무기 체계의 가격 인하에 관한 Raytheon사와 국방부간의 협상의 성공적 완료를 당해 인가의 조건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보통 문제가 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인가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연방 법원에 공식적 동의명령을 접수시키는 대신 당해 협상의 완료를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조건이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해결 쟁점은 가격 협상에 정부 측에 더욱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어 주는 것이다.

Raytheon사의 주주들은 95억 달러 규모의 당해 거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는데, 매사추세츠 주 Lexington에 소재한 이 회사는 이 절차가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합은 또한 GM사의 주주 및 휴즈사의 수익에 연계되어 있는 GM사의 H형 주식 보유자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몇몇 H형 주식 보유자들은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고자 GM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당해 유형의 주식을 발행하는 약관의 일부로서 약정되었던 20%의 프리미엄 지급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텔러웨어 형평법원에 제기된 당해 소송은 곧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H형 주식의 보유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인 Pamela Tikellis는 밝혔다. GM사는 이 소송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Raytheon사는 이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와 합의에서 Raytheon사는 최근 Texas Instruments 사로부터 취득한 델러스 소재 적외선 센서 사업

부문과 동 회사가 휴즈 사로부터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던 바 캘리포니아 주 El Segundo 및 조지아 주 La Grange에 소재한 지상 전자광학 시스템 사업 부문을 매각하겠다고 하였다. Raytheon사는 이들 두 사업 부문의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을 별개의 것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보도된 대로 당해 합의는 또한 Raytheon사로 하여금 전차파 유도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인 TOW의 후속사업으로 알려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려 하는 경쟁 사업부문을 별개의 것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계약은 내년도 전반기에 체결될 것이다. 그 때까지 Raytheon사는 반경쟁적인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된 회사의 일부가 될 이들 두 경쟁 사업부문간의 "방화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 두 건의 자산매각은 방위산업의 통합 개시의 계기인 냉전의 종료 이후 요구된 것들 중 최대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조라인을 통합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

하는 상당한 효율로 인하여 정부에 이전될 이득에 관하여 Raytheon사와 국방부간의 "협상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 97, 10/3, The Wall Street Journal

미 법무부, 월드콤사의 MCI사 취득 제안에 대해 반트러스트 조사

미국 사상 최대의 M&A(기업결합 및 취득)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장거리통신 4위 업체인 월드콤사에 의한 2위 MCI사의 취득 제안에 관하여, 미국 법무부는 10월 3일 일본경제신문사에 반트러스트법상 조사에 들어갈 방침임을 명확히 하였다. 관계기관과의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관례로 보아 법무부가 소관이 될 전망이다. 조사에서는 양 회사의 본업인 장거리통신보다도 오히려 인터넷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의 강도가 초점으로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형 안건에 대하여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중 한 쪽이 독점의 폐해를 초래할 것인지를 조사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조사담당기관이 될 가능성이 강하다」(법무부 타라모나 대변인)고 한다. 지금까지도 아메리카 온라인 사에 의한 컴퓨터서비스의 취득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 분야의 조사실적이 풍부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조사에서 최대의 초점이 될 것은 인터넷의 기간통신망에서 양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의 강도이다. 장거리통신에서는 AT&T사라는 거대 경쟁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의 두 회사는 대도시간을 잇는 인터넷 기간통신망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하여 「MCI사가 통신량 전체의 약 35%, 월드콤사가 그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법무부가 인터넷 시장을 전화 및 데이터통신이라는 광범한 전기통신시장의 한 분야로 간주하면 취득 제안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강하다. 반대로 인터넷 시장을 대체불이 부족한 독립된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제안 그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세계 거대 통신기업 중에 최첨단을 달린

다고 간주되어 온 브리티쉬 텔레콤사의 MCI사 취득계획을 뒤집을 지도 모르는 문제이므로, 조사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97, 10/4, 일본경제신문

인터넷「공공공간」독점에 반격-미국서 반트러스트 소송 잇달아

미국에서 인터넷 관련 반트러스트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전화 대기업인 GTE사가 6일, 다른 지역전화회사들을 상대로 「인터넷상의 전화번호검색 서비스의 독점을 꺾었다」면서 제소하였다.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누구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 출발한 인터넷도 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력기업에 의한 영역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소송은 인터넷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기업들이 반트러스트법을 지레로 반격에 나선 구도이다.

GTE사가 제소한 회사는 베르세우스사 등 지역전화회사 5개사와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인 야후 사, 넷스케이프 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금년 초에 인터넷상의 변호검색 서비스를 통합하였다. 이들은 더욱이 인터넷상의 검색 서비스를 전개하는 야후 사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자들이 GTE 사등의 동종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번거롭도록 하여 경쟁상대의 배제를 꾀하였다는 것이다. GTE사는 워싱턴 D. 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서비스의 중지등을 청구하고 있다.

변호검색 서비스는 전화번호부와 같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도 전화회사는 많은 광고수입이 기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인터넷상의 「1급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다. 피고측에서는 「위법행위는 없다」(넷스케이프 사)고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상대와 대전하는 게임 소프트웨어회사인 케즈마이 사는 9월말, PC통신 대기업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사를 「PC통신 서비스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 자사가 개발한 게임을 우대하였다」고 하여 제소하였다. 이 결

과 케즈마이사의 이용자가 격감하여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AOL사는 「제소에 근거가 없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사와 계약하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하고 있다.

월드컴 사에 의한 MCI사 취득제안에서도 「인터넷의 기간망을 과도하게 독점하지 않을까」가 초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양 회사가 결합되면 미국의 인터넷통신의 약 6할이 1개사에 의존하게 되어, 과도하게 시장을 지배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논의 배경에는 인터넷의 변질이 있다. 원래는 학술용 등의 「공공 네트워크」로서 출발하였으나, 각 기업의 영역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공공간」에서 「일부의 유력기업들이 통제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여, 일련의 대립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97, 10/8, 일본경제신문

미 대법원, 제조업체들의 최고 재판매가 가격 설정 허용

미국 대법원은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하여 소매업체들이 책정하는 가격의 상한(최고 재판매가)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11월 4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은 이러한 제한을 금지하고 앞으로 30년간 유지됨으로써 소매업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급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자유로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든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제 제조업체들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최고 재판매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해 결정은 자동차, 가구로부터 아이스크림 및 맥주에 이르는 다양한 일상제품에 대한 최고 재판매가 가격의 지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배스킨 라빈스, GM, 코닥 및 웬디스처럼 공급업체들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온 다수의 소비자제품 업체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는 소비자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이다”라고 이 사건에서 소송참가를 행한 대기업들 중 한 업체를 대리한 워싱턴 D. C.의 변호사인 Steven Feirman은 말하였다. “이제 소비자들은 낮

은 가격의 설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유명상표 제품의 가격 설정에서의 균일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로 당해 판결로 인해 균일한 가격 설정이 허용됨으로써 대다수 전국적 광고에 나타나는 친숙한 내용의 깨알같은 문구들, 예를 들어 “가격은 표시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또는 표시가격은 “참여 소매업체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경고문구 등이 사라질 수도 있다.

당해 판결은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권자들에게 그들 제품의 설명방식, 가격 설정 방식 및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방식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과거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속이었고 현재 워싱턴 D. C.의 반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인 James M. Spears는 말하였다.

이 판결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간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반트러스트법이 완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1977년에 대법원은 제조업체들이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제품 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그러한 제한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지되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Sandra Day O'Connor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모든 가격 상한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합리원칙’ 분석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격 상한이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식별해 낼 것이다”라고 O'Connor 대법관은 적었다. 당해 결정은 최저 재판매가격 설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는 여전히 위법하다.

O'Connor 대법관은 가격 상한은 특정한 지역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소매업체들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종종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녀는 과거의 규칙은 “실제로는 소비자 및 제조업체들을 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매업체들 및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당해 판결에 대하여

불평하였는데, 이는 공급업체 및 프랜차이즈권자들에게 가격에 관하여 지나치게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얼마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지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뉴욕 주 Kings Park에 소재한 세븐 일레븐 편의점 주인인 Roger Beazley는 말하였는데, 이 업체는 일부 제품들을 당해 편의점 체인 권장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이 도매가격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소매가격의 인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해 판결은 소매업체들이 “가격의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몇몇 주유소 업주 단체를 대리한 변호사인 Gary Persian은 말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 하면 가격압착을 받는 소매업체는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Persian은 덧붙였다.

이론적으로는 소매업체들은 여전히 특정 가격 상한의 공정성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는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별적 소매업체가 제조업체를 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전국 자동차판매업자협회를 대리하는 변호사인 James Moors는 말하였는데, 이 단체는 소매업체들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 및 프랜차이즈권자들은 지나치게 가격압착을 가하여 지역의 소매업체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삭감하거나 당해 사업에서 퇴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최고 재판매가격 설정)는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국제자동차제조업체협회를 대리하는 변호사인 Charles Lockwood는 말하였는데, 이 단체도 당해 소송에 참가하였었다. “가격이 낮아지면 제품이 더욱 많이 팔리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가한 업체 중에는 Wall Street Journal을 발간하는 Dow Jones & Co., 전미신문협회 및 다수의 출판사들이 있

었다. 이들의 소송참가 적요서는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신문사들은 구독부수의 감소 및 궁극적으로는 광고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포함한 연방 규제당국은 대법원에 대하여 과거의 접근방법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여 왔는데, 이는 1986년 Albrecht vs. Herald Co.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33개 주가 연합하여 Albrecht 판례이론이 번복된다면 위법한 가격설정 기도를 근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원래 일리노이 주 Addison에서 State Oil Co.로부터 Unocal 76 주유소를 임대한 Barkat Khan이 제기한 것이었다. Khan은 일리노이 주 Round Lake Beach에 소재한 State Oil 사가 자신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위법하게 저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방법원은 당해 반트러스트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시카고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를 다시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이제

State Oil 사의 가격 제한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하급법원으로 환송된다.

■ 97, 11/5, The Wall Street Journal

〈참고〉

◆ 주요국의 재판매가격제도 ◆

국 가	내 용
미 국	68년 폐지 97년 대법원 인정판결
일 본	지정재판품목 2종 (의약품, 화장품) 법정재판품목 저작물 (신문, 서적, 잡지, 레코드, 음악테이프 등)
독 일	서적, 잡지, 신문 허용
영 국	의약품, 서적, 지도 허용
프랑스	서적 허용
한 국	서적, 잡지, 신문 허용

EU

세가 사는 구주위원회의
이의고지서를 접수한 후 지적
소유권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

구주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TV·game기용 소프트웨어업체의 큰 회사인 “세가”에 의한

지적소유권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안에 관하여 EU경쟁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본건에 관한 신문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주위원회 발표문

(8월 14일자) 전문

세가는 동사제품 game기용의 소프트웨어(software)의 개발·판매를 독립계 소프트웨어업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 업자가 일정한 범위의 자사의 지적소유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수정하였다. 구주위원회는 “세가”에 의한 이 계약조항의 수정이 자사제품 TV·game기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 경쟁을 일층 촉진하고, 유럽의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주위원회 및 영국 무역산업성과의 협의를 거쳐 “세가”는 자사제 game기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소유권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할 것임을 결정하고, 구주위원회에 대해 6월경에 개정된 계약조항의 실제 적용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수정

계약조항에서 개개의 소프트웨어 업자는 세가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한 ① 자기가 판매하는 세가 제품 TV·game기용 소프트웨어의 종류 수에 관하여 일절 제한을 받지 않으며, ② 세가에 의한 사전 품질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이 세가와 독립계 소프트웨어 업자의 문제의 인가계약에 있어서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매 전의 기술시험을 의무로 하고, 그 시험 내용으로 ① 결함의 점검(Check), ② 적합성의 시험(Test) 및 ③ 인가계약내용의 준수 확인에 한정하고 더욱이 시험 실시 주체에 관해서도 소프트웨어 업자 측이 희망한다면 독립된 검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더욱이 수정된 계약조항에서는 인가소유자인 독립계 소프트웨어 업자는, “세가” 또는 세가가 승인한 제조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제조를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세가는 구주위원회가 이의를 신청한 기타의 규정에 관해서도 경쟁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수정했다.

상기의 수정에 의하여 구주위원회는 세가의 game기인 「게임 기아」, 「마스트·씨시스템」, 「maker

driver」, 「maker CD」 및 「세가·사당」에 관한 인가계약은 이미 EU경쟁법에 위반할 우려가 없음을 결론 지었다. 구주위원회에서도 세가의 새로운 인가계약이 자사제 game기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또한 유럽의 소비자에게 즉효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탐지에 따른 심사 결과 구주위원회는 1996년 5월 15일 세가에 대하여 「게임 기아」, 「마스트·씨시스템」, 「maker driver」, 「maker CD」의 인가계약에 관한 이의고지서를 통보하였다. 세가는 동년 5월 21일 자사의 신제품인 32비트의 「세가·사당」에 관한 인가계약의 표준약관에 관하여 구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구주위원회는 1996년 6월 4일 동 계약에 관해서도 반경쟁적이라고 하여 추가의 이의고지서를 통보하였다.

수정 전의 인가계약에서는 “세가”는 특히 인가소유권자인 독립계 소프트웨어 업자가 개발한 모든 game에 관해서, 발매개시 전에 인증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그들 업자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세가” 또는 “세가”가 승인한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게임 기아」, 「마스트·씨스템」, 「maker driver」와 「maker CD」에 관한 인가계약은 인가소유자인 독립계 소프트웨어에 대해 같은 해 일정한 종류 이상의 game software의 발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주위원회는 이러한 인가계약은 경쟁제한적이며, EU가맹국간 또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에 충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하고, 본건의 심사를 통해서 구주위원회는 영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왔다. 영국당국은 독점합병위원회에 의한 「영국에서 TV게임의 공급」에 관한 보고서의 발표문을 받아서 동일문제, 즉, “세가”의 인가계약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97. 8/17, EU 발표

영국 북아일랜드 전력회사들 MMC 조사에 직면

영국 본토의 발전회사들보다 43퍼센트나 높게 전력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발전회사들이 당해 지역의 전력당국인 Ofreg에 의해 독점·기업결

합 위원회(MMC)에 회부될 것이다.

MMC는 1992년 민영화시에 체결되었던 협약을 검토할 것인데 동 협약에 따르면 이들 발전회사들은 배·송전 및 전력공급상장회사인 Northern Ireland Electricity(NIE)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Ofreg과 이들 회사들-벨기에-미국간 컨소시엄인 Nigen 사, BG 사의 자회사인 Premier 사, 그리고 Londonderry 지역의 소규모 석탄 발전소인 Coolkeeragh 발전소 경영진-과의 오랜 기간의 협의가 실패한 이후 나온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평균 발전가격은 kWh당 4파운드 15펜스로서,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발전가격 2파운드 90펜스와 비교된다. 이는 가정용 전력가격의 50%에 해당하며 산업용 전력가격의 80%나 된다.

규제당국의 장인 Douglas McIlDoon은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가격 차이는 2010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Ofreg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3파운드 50센트까지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본토의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반으로 줄일 것이다.

북아일랜드 발전소의 민영화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발전소처럼 신주 발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간의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는 장기 계약에 대하여 이들 세 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2010년까지 유지된다.

“MMC의 검토가 있는 후에야 해결책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발전산업 구조를 MMC에 회부할 것을 제의한다”라고 McIlDoon은 말하였다.

MMC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G 사는 북아일랜드 전력수요의 50%를 공급하는 Ballylumford의 기존 설비의 일부를 대체할 복합 사이클 발전소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BG 사는 이 새로운 발전소로 인하여 “Ofreg이 요구한 가격 인하 목표의 절반은 달성될 것이다”라

고 하였다.

Nigen 사의 관리이사인 David McIlhagger는 어떠한 MMC의 검토이든 정부와도 관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북아일랜드 발전소들이 책정하는 가격이 잉글랜드 및 웨일즈보다 훨씬 높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격은 이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정부 관리는 발전회사들은 그들의 계약이 검토를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1999년 2월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전력 거래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규제당국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McIlldoon은 MMC가 9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Scottish Power사와의 해저 송전 장치를 은연중에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MMC의 업무 중 일부는 Scottish Power사와 NIE사간의 계약을 검토하는 일일 것이라고 하였다.

Ulster 대학의 경제학자인

Michael Smyth는 NIE사가 당해 송전 장치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는 가격 인하의 압력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 97, 10/15,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

유럽 경쟁정책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럽에서의 상관행을 조사중이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대한 당해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럽에서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을 가능성 및 경쟁자들을 압착하여 시장에서 몰아낸다고 주장되는 반경쟁적 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조사 중 2건은 다른 회사들의 공식적 이의제기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싱 관행에 관계된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6건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유럽위원회 관리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처리해야 할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고 한 관리는 말하였다. “어떤 사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6개월 전 반대 의견서를 송부하였다.” 그는 유럽위원회의 경쟁 관련 우려에 관한 응답서가 접수되었으며 연말 이전에 동 회사가 참석하는 비공개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 위원회가 몇 개월 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나 된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는 오래된 얘기이다. 1건 내지 2건이 아직 계속중이지만 새로운 상황의 진전은 없다”고 동 회사는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미 미국 경쟁정책 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다. 적어도 6개 주의 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격설정 및 영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0월 16일 한 유럽위원회 관리의 미국 당국들과 조사방침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트 사에 대한 정면 공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들과 체결하는 계약이 당해 분야의 경쟁회사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당해 조사는 EU조약 제85조 및 제86조에 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다루고 있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EU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될 경우 동 회사는 자사의 판매관행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비록 특정한 경쟁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플 컴퓨터 사에 대한 1억 5,000만 달러 투자 결정도 조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94년 유럽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미국 법무부의 반트러스트 기소내용에 대한 화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해 화해의 조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들과의 윈도우 프로그램 라이선싱 협정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 97, 10/17, Financial Times

일본

일본 공취위의 서비스업 위탁거래 가이드라인 원안, 가격인하 요청 금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7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서비스업의 위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되는가를 보여 주는 가이드라인의 원안을 공표하였다. 발주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회사 등 수주자에게 가격인하 및 대금지불의 연기를 강력히 요청한 경우에 독금법 위반이 된다고 하고 있다. 공취위는 12월 15일 까지 일반으로부터의 의견을 모아 1997년도 중에 최종안을 작성할 것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공취위 연구회가 6월에 정리한 보고서로서, 서비스업의 위탁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독금법상 문제

가 되는가가 사업자들에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자 이의 작성이 결정되었다. 대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 광고제작, 빌딩관리, 내항해운 등 발주측과 수주측의 지위에 거대한 우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 9개 업종이다.

동 가이드라인 안은 독금법 위반이 되는 거래를 일곱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대금지불관계에서는 발주자가 우월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가격인하를 강제한 경우 및 지불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세 유형을 제시하였다. 부당조건부 발주의 예로서는 수주자에게 협찬금의 부담을 요구한 경우 및 상품 구입을 요청한 경우의 두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프로그램 변경 등 발주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라 재작업을 요구하는 것 및 완성된 작품의 저작권 및 의장권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97, 10/28, 일본경제신문